고용노동부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3.(화) 배포 즉시

괴롭힘 신고사건을 보다 더 철저하고 엄정히 조사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1.3.(화) 매일노동뉴스, 목 조르고 칼 들어도 “괴롭힘 아니다” 두 번 눈감은 노동청

2. 설명 내용

□ 정부는 개별 괴롭힘 신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노동감독관의 당사자 조사 및 확인 절차, 사업장 조사의 공정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,

○ 행위자 2명의 욕설 등 폭언, 목 조름·흉기 위협 행위 등에 대해 **노동감독관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**임

□ 직장 내 괴롭힘은 ①**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**하고, ②**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** ③**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**로 괴롭힘 발생시 노사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**사업장 자체조사 의무를 규정**하고 있으나,

○ ①사업장에서의 자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에게 해당사건을 조사토록 시정지시하였으나 불응할 경우, ②사업장이 실시한 조사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불인정하였으나 감독관이 인정하고 시정지시한 건에 대해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

* 참고로, 지난 4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음

□ 정부는 **노동감독관의 업무처리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**하고, **당사자에 대한 조사절차 및 확인방법 등 안내·지도를 확행**토록 하겠음.

○ 판단이 어려운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**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활용을 강화**하는 한편,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보다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음**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유나 (044-202-7526)
		담당자	사무관	오정택 (044-202-753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물가 대한민국 OPEN